

경운대학교 교재출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용 도서출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교원에게 교내학술연구비지급규정으로 연구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는 저(역)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관할사무) 출판업무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고 그 임무는 경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의 출판을 관리한다.

<개정 2021.10.01.>

제3조(교재출판운영위원회) ① 교재용 도서 출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재출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교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교학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0.0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재용 도서 출판업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재용 도서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3. 교재용 도서 출판물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교 교직원 또는 외래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출판물 관리)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를 출판하고자 하는 저자는 발간요구수량·발간시기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7조(출판계약) ① 교학처장은 각 저자로부터 출판의뢰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외부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교학처장은 각 저자로부터 출판의뢰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대표 저자와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8조(저작권 및 출판권) ①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한 교재용 도서 출판물의 저작권은 일체 본교에 귀속한다.

②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를 외부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출판시, 출판권은 외부 출판사가 가지며,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9조(인세[印稅]) ①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1차 개발한 교재를, 교과수업 또는 판매 목적 등으로 증판하는 경우, 외부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출판시, 교재 가격 및 저작권료는 교재출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저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외부 출판사와 계약한 저작권료 수입의 50%를 지급한다.

③ 저자가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이직할 경우에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비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교재에 대한 출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출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판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칭함)와 경운대학교(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이 편찬 또는 저작한 _____ 출판함에 있어서 다음 조항에 따라 출판계약을 맺는다.

1. 을은 본 출판도서의 저작권을 가지며 갑은 그 발행권 및 판매권을 갖는다.
2. 다만, 발행권 및 판매권은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2년의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3. 본 도서의 출판에 있어서 판매부수 및 정가에 따라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판매부수×정가×()/100
 단, 저자용, 납본용, 기타의 기증본 등은 공제한다.
4. 원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5. 도서규격, 단수, 체재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규격체재 :
 나. 원고매수 :
6. 갑은 출판과 동시에 발행부수 중 다음의 부수를 을에게 기증한다.
 가. 초판 : 5부
 나. 중판 : 2부
7. 갑은 그 발행부수를 증명하기 위해 을의 인지를 저작권란에 첨부하는 것을 생략한다.
8. 초판 발행부수는 _____ 부로 정한다.
9. 출판도서의 정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0. 을은 갑의 양해 없이 동종의 출판물을 갑 이외의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없다.
11. 본 도서의 출판에 있어 을의 원고 제출 및 갑의 출판기일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원고제출기일 : 년 월 일
 나. 도서출판기일 : 년 월 일
12.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출판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기타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정할 수 있다.

201 년 월 일

(갑) _____

(인)

(을) 경운대학교 총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인 세 계 약 서

경운대학교(이하 “갑”이라 칭함)와 _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이 편찬 또는 저작한 _____ 출판함에 있어서 다음 조항에 따라 인세계약을 맺는다.

1. 본 출판도서의 저작권은 갑이 갖는다
2. 본 도서의 출판에 있어서 갑이 외부 출판사(_____)와 계약한 저작권료 수입의 50%를 갑이 을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3. 원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은 갑의 양해 없이 동종의 출판물을 타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없다.
5. 저자가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이직할 경우에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출판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기타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정할 수 있다.

201 년 월 일

(갑) 경운대학교 총장

(인)

(을) _____

(인)